

1. 법률

가.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 범위 확대 등)

1. 법률*

가.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6/8/18 개정 · 2027/2/19)

1) 개정 이유
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6. 2. 19. 공포, 8. 20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 -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,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

2) 주요 내용

-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 범위 확대(제10조의10 제1호)
 -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하여 정보제공의무(트래블룰)는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,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와 관련된 의무가 부과
 - (기존) 가상자산사업자가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
 - (개정) 금액에 관계 없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제공
-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신고사항(제10조의11 제2항 · 제3항 신설)
 -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를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
 -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, 주식보유현황 등으로 정함
-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 불수리 요건 구체화(제10조의12 제5항 · 제7항 및 별표 1 신설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보도자료 및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- 가상자산사업자(임원·대표자, 대주주 포함)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 불수리 사유
 - (가상자산사업자) 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고,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,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, 등록 등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
 - (임원과 대표자)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
 - (대주주)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(내국법인),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어야 하며(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)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
-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·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의 인력과 조직, 가상자산거래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·사무장비·보안설비 및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등의 물적설비, 가상자산거래 업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·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함
-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,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

□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거래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범위 확대(제10조의20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)

-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거래를 할 때 해야 하는 조치를 추가로 규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